

부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4220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건]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4220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3417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최종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창

변론종결 2022. 11. 24.

판결선고 2022. 12. 1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3417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에 소재한 방호복 등의 기타 직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화섬직물 임가공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직포 제조업체이자 거래처인 'D'를 운영하는 E에게서 피고를 소개받아 2020. 5. 10.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로부터 매월 100톤 정도의 부직포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2020. 5. 29.까지 부직포 원단 20톤(무게 약 38g, 오차범위 38~40g, 규격, 5,000여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부직포'라고 한다)을 공급받고 이처럼 우선 공급된 물량에 대한 물품대금은 수입통관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에서 피고를 대리 · 대행하는 중국 회사인

F유한공사(F, 이하 'F유한공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2020. 5. 15.경 중국 회사인

G유한책임공사(H유한책임공사, 이하 'G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게가 각 38g, 35g 및 30g인 1,630mm 규격의 흰색 부직포 원단을 2020. 6. 1.부터 2023. 5. 31.까지 적게는 30톤에서 많게는 300톤 정도를 매월 구입하되, 계약보증금으로 10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F유한공사로부터 위 다.항과 같이 확보한 부직포 원단 미화 140,829.20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F유한공사에게 위 미화를 송금하였으며, F유한공사는 2020. 5. 19. 및 2020. 5. 21. 2회에 걸쳐 총 100만 위안의 계약보증금을 G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제1, 2계약을 통해 G공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는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부직포 20톤(제1 계약상 무게 38g, 1,630mm 규격의 흰색 부직포 원단에 해당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F유한공사는 이를 포함하여 총 31,203kg의 부직포 원단을 2020. 5. 28.에야 중국에서 선적하였고 이는 2020. 6. 1. 부산항에 도착하여 통관을 거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은 을 제11호증과, 을 제2호증은 을 제10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2020. 5. 29.까지 방호복 제조에 필요한 부직포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납품기일까지 이를 공급받지 못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한 방호복 등을 제때 생산·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또는 2021. 6. 16.자 계약해지통보 및 계약금 반환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¹⁾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부직포 원단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선적이 늦어져 납품기일보다 늦게 공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하여 양해를 받았고, 2020.

6. 1. 수입통관 직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납품장소를 지정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직포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건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급부가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지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직포 인도 의무가 정기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직포의 납품기일을 2020. 5. 29.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초순경 및 같은 달 19.경 각 인천세관에 적재의무기한을 '2020. 6. 8.' 내지 '2020. 6. 18.'로 하여 수출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20. 6. 1. 피고 외 다른 업체로부터 26,573,184원 상당의 부직포 원단을 공급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6. 1. 다른 거래처로부터 부직포 원단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위 무게가 약 18g인 부직포 원단으로서 단위 무게가 약 38g인 이 사건 부직포와 규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직포의 수입통관을 마쳤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이를 대체하고자 위 2020. 6. 1.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우선 공급 물량의 인도 의무가 정기행위에 해당한다면, 문서 또는 구두로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인도기한을 도과할 경우의 위약금 유무, 계약금의 처리 및 특히 이 사건 약정이 계속적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 위 약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도,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2020.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직포의 인도를

독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20. 6. 8. 또는 2020. 6. 18.까지 수출용으로 방호복 등을 선적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 인도일로부터 이를 경과한 2020. 6. 1. 이 사건 부직포를 인도받을 경우 위 선적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0. 5. 29. 이 사건 부직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주장을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핀다. 본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80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상 이 사건 부직포의 납품기일은 2020. 5. 29.이고 원고는 인도받는 즉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위 인도기한을 도과한 2020. 6. 1. 이 사건 부직포의 수입통관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6, 7,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을 당시 피고가 부직포 원단 등을 중국 현지에서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방호복 등의 제조를 위한 부직포 수요가 폭증한 관계로 중국에서 선적일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최대한 제때 납품하도록 노력하겠지만 2~3일 납품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중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직포가 예정된 선적일을 지나 2020. 5. 28. 선적된다는 선적일자증명을 받은 다음 위

부직포의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2020. 5. 29. 원고 앞으로 55,164,494원 상당의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③ 피고가 2020. 6. 1. E를 통해 이 사건 부직포가 부산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을 마쳤으며 이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알리면서 계약금 중 잔금 10,000,000원과 물품대금 55,164,494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E를 통해 '경주시 C'로 물품을 보낼 것을 통지하면서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E에게 알려준 위 주소는 당시 거래관계에 있던 E과 체결한 별도의 부직포 납품계약에 관한 납품장소를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호증을,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원고와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2020. 5. 말부터 2020. 6. 말 무렵에는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원고와 거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알려준 주소는 이 사건 부직포와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더라도, 2020.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와 E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그중 이 사건 약정 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0. 5. 12.경까지 이미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그 후 원고와 E 사이에 다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0. 6. 1.로부터 약 2개월 지난 2020. 7. 20.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경주시 C'는 이 사건 부직포에 관한 납품장소로 통지한 것이다), ④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직포를 부산 동구에 있는 보세구역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직포의 납품기일을 2020. 5. 29.로 정하되 그로부터 2~3일 지연되더라도 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 약정 납품기일로부터 3일째인 202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직포를 인도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의무의 이행제공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직포 인도 의무와 원고의 물품대금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피고의 위 인도 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인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직포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직포 인도 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부산에 소재한 회사들이고,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부직도 인도 장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제3의 장소를 특정하거나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의 인도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직포를 부산항에 하역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자 제3의 장소로 위 부직포를 납품할 것을 통지한 채 이를 인수하지 않고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거나 이행지체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2020. 9. 25.에야 위 지급명령신청서로서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1. 6. 17. 피고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 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1) 2021. 6. 16.자 참고서면